LOTTE CASTLE

인천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 분양광고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 8082호(2009.06.23)로 분양신고
-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지구 M4블럭
- ■ **대지면적** : 64,992.50㎡ 중 오피스텔지분 19,734.1914㎡
-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50층 1개동 오피스텔 총 498실
- ■ **용　　도** : 업무시설 (오피스텔)

■ 공급면적 및 분양금액

(단위: 원, ㎡/VAT포함)

TYPE (공급면적)	세대별 건축면적(㎡) 세대별면적 전용	공용	공급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소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실수 (총498실)		층별구분	총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5% (계약시) 2009-07-09	중도금 60% 1회 10% 2010-01-15	2회 10% 2010-07-15	3회 10% 2011-01-17	4회 10% 2011-07-15	5회 10% 2012-01-16	6회 10% 2012-07-16	잔금 35% (입주지정일) 2013-02-01
82	58.5657	23.4698	82.0355	3.4238	26.0876	29.5114	111.5469	26.8580	180	20	6~10	123,519,961	135,480,039	259,000,000	12,95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90,650,000
										20	11~15	126,381,428	138,618,572	265,000,000	13,25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92,750,000
										20	16~20	127,812,162	140,187,838	268,000,000	13,4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93,800,000
										20	21~25	129,719,800	142,280,200	272,000,000	13,6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95,200,000
										20	26~30	131,627,448	144,372,552	276,000,000	13,8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96,600,000
										20	31~35	133,535,086	146,464,914	280,000,000	14,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98,000,000
										20	36~40	135,442,735	148,557,265	284,000,000	14,2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99,400,000
										20	41~45	136,396,554	149,603,446	286,000,000	14,3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100,100,000
										20	46~50	138,304,202	151,695,798	290,000,000	14,5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101,500,000
119	85.4338	34.2370	119.6708	4.9946	38.0557	43.0503	162.7211	39.1797	88	1	3	160,719,017	176,280,983	337,000,000	16,85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17,950,000
										1	4	164,057,399	179,942,601	344,000,000	17,2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20,400,000
										2	5	169,303,419	185,696,581	355,000,000	17,75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24,250,000
										10	6~10	176,933,992	194,066,008	371,000,000	18,55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29,850,000
										10	11~15	180,272,373	197,727,627	378,000,000	18,9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32,300,000
										10	16~20	183,133,831	200,866,169	384,000,000	19,2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34,400,000
										10	21~25	185,518,394	203,481,606	389,000,000	19,45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36,150,000
										10	26~30	188,379,861	206,620,139	395,000,000	19,75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38,250,000
										10	31~35	191,241,318	209,758,682	401,000,000	20,05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40,350,000
										10	36~40	193,625,881	212,374,119	406,000,000	20,3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42,100,000
										10	41~45	195,533,519	214,466,481	410,000,000	20,5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43,500,000
										4	46~47	197,441,168	216,558,832	414,000,000	20,7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44,900,000
143	102.1263	40.9264	143.0527	5.9705	45.4913	51.4618	194.5145	46.8348	96	2	3	186,949,127	205,050,873	392,000,000	19,6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37,200,000
										2	4	191,241,318	209,758,682	401,000,000	20,05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40,350,000
										2	5	197,918,072	217,081,928	415,000,000	20,75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45,250,000
										10	6~10	206,025,560	225,974,440	432,000,000	21,6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51,200,000
										10	11~15	210,317,761	230,682,239	441,000,000	2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54,350,000
										10	16~20	214,133,047	234,866,953	449,000,000	22,45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57,150,000
										10	21~25	216,994,514	238,005,486	455,000,000	22,7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59,250,000
										10	26~30	220,332,896	241,667,104	462,000,000	23,1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61,700,000
										10	31~35	223,671,268	245,328,732	469,000,000	23,45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64,150,000
										10	36~40	226,055,831	247,944,169	474,000,000	2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65,900,000
										10	41~45	228,440,384	250,559,616	479,000,000	23,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10	46~50	230,824,937	253,175,063	484,000,000	2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150	107.3890	43.0354	150.4244	6.2781	47.8355	54.1136	204.5380	49.2483	46	1	3	207,933,208	228,066,792	436,000,000	21,8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52,600,000
										1	4	212,702,313	233,297,687	446,000,000	22,3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56,100,000
										1	5	219,855,982	241,144,018	461,000,000	23,05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61,350,000
										5	6~10	228,917,288	251,082,712	480,000,000	2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5	11~15	233,686,404	256,313,596	490,000,000	2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	16~20	237,024,776	259,975,224	497,000,000	2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5	21~25	240,363,158	263,636,842	504,000,000	2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5	26~30	244,178,444	267,821,556	512,000,000	2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5	31~35	247,993,731	272,006,269	520,000,000	2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5	36~40	250,855,198	275,144,802	526,000,000	2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5	41~45	253,239,751	277,760,249	531,000,000	2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3	46~48	255,147,399	279,852,601	535,000,000	2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162	116.2234	46.5757	162.7991	6.7946	51.7707	58.5653	221.3644	53.2997	88	2	3	214,133,047	234,866,953	449,000,000	22,45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57,150,000
										2	4	218,902,163	240,097,837	459,000,000	22,95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60,650,000
										2	5	226,055,831	247,944,169	474,000,000	2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65,900,000
										10	6~10	236,070,957	258,929,043	495,000,000	2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10	11~15	240,840,072	264,159,928	505,000,000	2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	16~20	244,178,444	267,821,556	512,000,000	2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0	21~25	248,470,645	272,529,355	521,000,000	2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8	26~29	251,809,017	276,190,983	528,000,000	2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8	32~35	255,624,314	280,375,686	536,000,000	2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0	36~40	258,962,686	284,037,314	543,000,000	2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0	41~45	261,347,238	286,652,762	548,000,000	2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6	46~48	263,254,887	288,745,113	552,000,000	2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 상기 분양금액은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당사에서 적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실별 층 및 향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릅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오피스텔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기계 · 전기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기계 · 전기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잔금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하되, 건축법 제 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자격 및 일정

- 모집공고일(2009.06.25) 현재 만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청약기간	당첨자발표일	계약기간	비　고
일　자	2009. 06. 30(화) ~ 2009. 07. 02(목)(3일간)	2009. 07. 08(수)	2009. 07. 09(목) ~ 2009. 07. 10(금)(2일간)	

■ 청약 신청 장소 및 신한은행 인터넷청약 이용 안내

- 청약 신청 장소 : 신한은행 본 · 지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www.shinhan.com)
- 신청예정자께서는 청약이전에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뱅킹 기 가입자께서는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이용대상	인터넷	• 인터넷뱅킹 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신한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신한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 자산관리 & 재테크→ 부동산→ 기타 부동산/오피스텔 청약
이용시간		• 08:30 ~ 17:30 (청약접수 완료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오피스텔 타입별 청약 신청금

※ 현장 및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창구 신청자에 한함)
82.0355㎡	100만원	• 신한은행 본 · 지점 •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9.6708㎡		
143.0527㎡		
150.4244㎡		
162.7991㎡		

■ 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접수시간 – 09:00~16:00)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 (신한은행 본 · 지점 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서명도 가능)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양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확인증표는 제출 생략 가능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결정방법

- 당첨자 발표일시 : 2009.07.08(수)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시 및 홈페이지 고시
- 당첨자 선정 및 호수 결정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타입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환불일시 : 당첨자 발표이후 금융기관 기준 익영업일 이후[2009.07.09(09:00~16:00)※ 단,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금품분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합니다.
  ※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한함)로 이체신청 하신 분 및 인터넷청약을 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지정계좌 및 인터넷 출금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09.07.09(목) ~ 2009.07.10(금)(2일간, 10:00 ~ 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납부 : 국민은행(예금주 : 롯데건설(주)) 계좌(465101-01-196997)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 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통(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가능한 한 계약금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무통장입금증(은행 입금시)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청약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국 민 은 행	465101-01-197006	롯데건설(주)	

- 분양대금 관리 : 롯데건설(주)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회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융자안내

- 대출기관 및 방법 : 신한은행 40%(중도금 1~4회차 무이자 융자) + 제2금융권 20%(중도금 5~6회차 무이자 융자). 단, 대출금액은 정부정책 및 금융권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대출조건은 금융기관 대출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에 한함

■ 계약조건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동번호, 단지 조경.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색채 계획은 변동될 수 없으며, 변경시에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예정일 : 2013년 2월 예정

-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별도통보합니다.
- 실준공일이 준공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실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이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실제시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D(150.4244㎡) TYPE 형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동안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별도계약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인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신도시개발, 학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 이외의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시 택지개발 여건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반시설공사지연과 노사분규(연관업체)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준공시기 등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거 적용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립하는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시설물의 각 실 위치, 용도, 기구, 수량 내부시설물은 본 공사시 사업주체의 계획에 의거 시공 및 설치 예정입니다.
- 일부호실은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이 복합화된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조경은 청라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창호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별로 사용된 천연석 및 타일의 표면 등에 균열처럼 보이는 문양은 자체의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컨셉으로 하자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의 전시 조명등, TV, 식탁, 테이블, 소파, 커튼, 액자 등의 모든 소품은 전시용입니다.
- 자재 사진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사진은 특정 호실을 촬영한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라지구내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 상업시설의 조성 등은 해당 교육청의 추진과정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오피스텔 준공시기와는 무관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량, 조망권 등이 감소(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색채계획, 옥탑 등 외관 디자인 및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의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시설단지로써 아파트 대지의 별도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세대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라지구 인접지에는 각종 환경위해시설(화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 서부산업공단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풍향 등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외부창호는 내부압 구조검토 등이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의 경우 판매시설의 공조기계실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위치한 공개공지는 외부인과 공동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구조개선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이 아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임의로 가구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CG, 모형)의 단지외 시설 및 단지 내,외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출입구, 문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G, 모형의 색채 및 외관 형태는 실공사시 공사여건 및 심의인허가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주상복합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분양합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보증채무의 내용
제 01292009-104-0000100	₩ 128,204,000,000	분양신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포함) 까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진다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함
  ②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분양받은 보증채권자 전부의 실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복리시설부분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각 보증채권자에게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함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단위 : 원 \ VAT 별도
건　축	(주)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476,359,226
전　기	(주)지화기술단	1,441,991,307
소 방 · 통신	(주)한일엠이씨	438,372,000

■ 시행사 및 시공사 :

- 시행사 : 롯데건설(주)
- 시공사 : 롯데건설(주)
- 분양대행사 : (주)디딤돌씨엔디

■ 분양문의 :

청라 롯데캐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번지)
Tel. 032-427-7171

견본주택 위치도

총 1,326세대 중
오피스텔 82㎡~162㎡ 498실
분양문의 032)427-7171
시행 · 시공 롯데건설